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017

발의연월일: 2024. 8. 21.

발 의 자:임오경·박해철·이기헌

강유정 • 한병도 • 김재원

민병덕 • 조계원 • 서영교

문대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초등학교 체육 수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스포츠강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. 현재 스포츠 강사는 초등학생 담임 교사와 함께 주 21시간의 체육 수업을 담당하 는 것은 물론, 방과 후 수업이나 운동회 같은 초등학교 체육 활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.

한편, 현행법상 스포츠강사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뜻함. 그러나 해당 조항은 초등학교가 아닌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, 이는 자구 오류인 것임.

이에 그 오류를 바로 잡고, 아울러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'체육전문 지도사'로 변경하여 스포츠강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 위상을 공고 히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7호 및 제13조).

법률 제 호
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 중 "스포츠강사"를 "체육전문지도사"로, "제2조제2호"를 "제2조제1호"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중 "스포츠강사"를 "체육전문지도사"로 하고, 같은 조제1항 중 "제2조제2호"를 "제2조제1호"로, "스포츠강사"를 "체육전문지도사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스포츠강사"를 "체육전문지도사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스포츠강사는 제2조제7호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체육전 문지도사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		
7. "스포츠강사"란 「초・중등	7 <u>체육전문지도사</u>		
교육법」 <u>제2조제2호</u> 에 따른	<u>제2조제1호</u>		
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			
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			
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			
다.			
8.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		
제13조(<u>스포츠강사</u> 의 배치) ① 국	제13조(<u>체육전문지도사</u> 의 배치)		
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	①		
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			
동 활성화를 위하여 「초・중			
등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	<u>제2조제1호</u>		
초등학교에 <u>스포츠강사</u> 를 배치	<u>체육전문지도사</u>		
할 수 있다.			
② 제1항에 따른 <u>스포츠강사</u> 의	② <u>체육전문지도사</u>		
자격기준, 임용 등에 필요한 사			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		